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www.can.or.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5년 8월 26일
	담당부서	(사)미래소비자행동 ☎02-706-137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편리함만 챙기고 안전은 뒷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조사결과, 1개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이 1,004개소 97.2%로 나타남.
- 안전상비의약품 동일 품목 1회 포장 단위 2개 이상 판매 위반율(56.1%)이 여전히 높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6가지 준수사항 위반여부(주의사항 게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수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1,033개소 중 97.2%(1,004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 사항 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 방문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미판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편리성 확보했지만 소비자 안전 확보는 나몰라라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

선이 안 되고 있었다.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 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다.

[표 1] 년도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정상판매 여부	정상 판매	29(2.8)	59(5.7)	30(2.9)	43(4.3)
	준수사항 위반	1,004(97.2)	977(94.3)	988(97.1)	957(95.7)
	합 계	1,033(100.0)	1,036(100.0)	1,018(100.0)	1,0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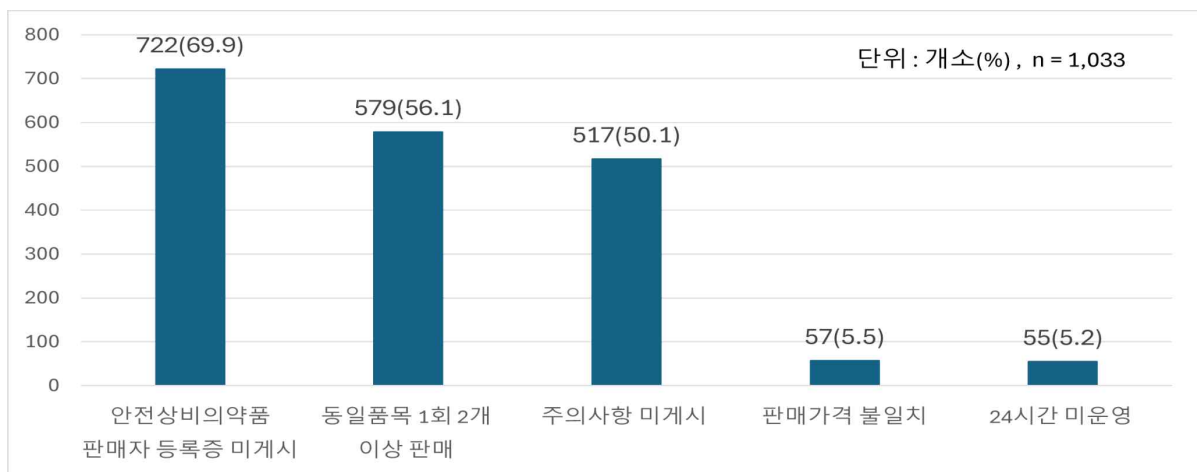
■ 안전상비의약품은 업소당 평균 8.2개 구비, 16개소는 미판매로 확인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다.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음.

* 안전상비의약품을 매대 안쪽에 보관하고, 직접 꺼내주는 방식이라 외부에서 정확한 개수 확인이 어려움.

■ 조사대상 6개 항목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위반이 69.9%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순이었다.



[그림 1]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여전, 편법도 여전**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으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여부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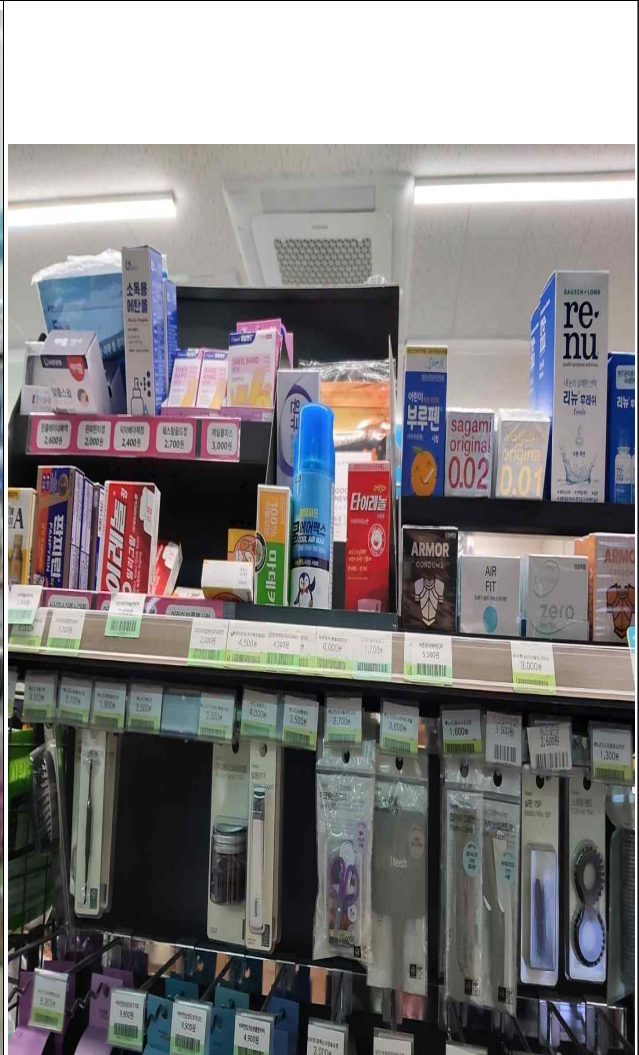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계(누적비율)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계	1,033*(100.0)	995(100.0)	38(100.0)	1,033(100.0)	1,002(100.0)	982(100.0)
1개만 판매	454(43.9)	432(43.4)	22(57.9)	421(40.7)	514(51.3)	517(52.7)
2개 이상 판매	579(56.1)	563(56.6)	16(42.1)	612(59.3)	488(48.7)	465(47.3)

■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안전상비의약품-공산품 간 혼합 진열 오남용 우려**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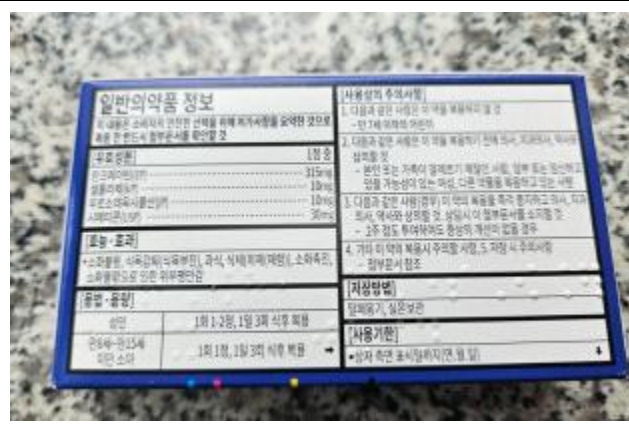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경우

[그림 2] 안전상비의약품 구분이 안되는 사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판매 환경 개선 필요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